



2020년 8월 1일부터
 모든 건설현장에서
 월 8일 이상 근로하면
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
 신고 대상입니다



NPS 국민연금공단
 National Pension Service

문의 및 상담 : 국번없이 1355(유료) / 홈페이지 WWW.nps.or.kr

1

가입기준은?

1 대상 건설현장

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
- 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수리공사 현장



2 가입대상 근로자

-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



3 보험료 부담

- 9%의 보험료를 근로자 4.5%, 사용자 4.5% 부담
- *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
- 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
- * 국민연금 2.49% → 4.5%, 건강보험 1.70% → 3.12%
- ☞ (사후정산제도)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
 특히,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발주기관에서 보존해주는 제도



4 적용 시기

- 2018.8.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
 (단,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020.7.31까지 2년간 유예)



2

가입자 혜택은?

■ 노령,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지급

노령연금	10년 이상 가입하고, 62세*가 된 때 지급 * '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1~5세 상향 조정, '69년생부터 65세에 지급
분할연금	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
장애연금	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(였던 자)에게 질병·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 * 장애1~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~60%를 연금으로,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%를 일시금으로 지급
유족연금	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(였던 자) 또는 노령·장애연금(2급이상)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
반환일시금	60세 도달, 사망, 국적상실·국외이주 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
■ 연금지급 현황

- 62세 이상 10,181천명 중 4,489천명이 연금 수급(수급률 44.1%)

(2019.12월 기준)

구 분	전체	노령	장애	유족
수급자 수(천 명)	4,961	4,090	78	793
지급액(억 원)	217,116	190,693	3,787	22,636
수급자 비율(%)	100	87.8	1.8	10.4
평균 연금월액(천 원)	471	527	456	285
최고 연금월액(천 원)	2,121	2,121	1,647	1,077

※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당해 연도 기준, 평균 및 최고 연금월액은 당월 기준임

3

가입신고 절차는?

구 분	신고 사항 등
사업장 적용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면적용해당신고서,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제출 (EDI로 신고)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, FAX,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, 성립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EDI 홈페이지(http://edi.nps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
가입자 신고 (취득/상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입자 취득신고 :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가입자 상실신고 : 퇴사하거나 8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 • (EDI로 신고) 다음달 5일까지 신고
보험료 고지 (일괄경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월 15일까지의 (국민연금공단에서) 보험료 산정 및 (건강보험공단에서)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자격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익월 5일까지 신고 후 일괄경정 금액으로 납부
보험료 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납부기한 : 매월 10일



☞ (두루누리보험료지원) 사용자(법인 대표이사 포함)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고시소득(20년 기준 215만 원)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30~90% 지원(건설현장의 경우 본점과 건설현장 모두 10인 미만의 경우에만 지원)